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 따라 저소득주민 용자대상자 선정 심의·의결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화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기하고 전세입주보증금 확대 지원으로 전세주택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연대보증인만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선택적 대안 필요(안 제4조)

-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 관련 서류 등을 규칙에 반영

나.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변경(안 제5조)

- 현행 : 구미시정조정위원회
- 개정 :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

다. 현 부동산 시세에 부합하게 전세입주보증금 확대 지원(안 제6조)

- 현행 : 2천만원이하
- 개정 : 3천만원 이하

3. 조 례 안 : 불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미시정조정위원회”를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2천만원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주거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구미시정조정위원회”를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구미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미시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신청절차) ① (생 략)	제4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신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u>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u>	② <u>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제5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주거안정자금 신청가구 및 생활 안정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생활형편 등을 조사하고 <u>구미시정 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한다.	제5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① ---- ----- ----- ----- <u>구미시</u> <u>생활보장위원회</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② (생 략)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전세입주보증금은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이 경우 융자한도액은</u> <u>「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u> <u>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u>	③ ----- <u>3천만원이하</u> ----- --. <u><후단 삭제></u>

<u>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u> <u>내로 한다.</u>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소관 실·과		주민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변 동 석
	담 당	권 혁 성
	담 당 자	정 맑 음 (480-5124)